

인천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가단2518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피고B

변론 종결2021. 2. 24.

판결 선고2021. 3. 17.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0. 1.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14. 접수 제1995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5. 2. 1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 피보증인을 C,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05. 2. 12.부터 2005. 12. 31.까지로 하여 C이 고용 관계에 있는 D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원고가 D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9. 23. D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9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 C은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 2006고단4013](#)업무상횡령 사건에서 'C은 2004. 1. 1.부터 2005. 10. 31.까지 D의 인천지역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 1. 30.경부터 2005. 10. 말경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의약품 대금을 거래 약국으로부터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거나 반품받은 의약품을 D에 입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합계 381,605,935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 및 의약품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3) D은 위와 같은 C의 횡령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7. 3. 8. D에 보험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68299](#)호로 위와 같이 D에 지급한 90,000,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차365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9. 7. 16. 'C은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9.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11. 15. C에게 송달되어

2019.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E의 소유였는데, E의 사망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와 C, F, G가 2020. 1.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9. 7. 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20. 1. 6. 여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이 상속받은 1/4 지분을 증여(이하 C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14. 접수 제19953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전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신원보증보험인으로서 2007. 3. 8. D에 C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90,000,000원을 배상함으로써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C이 위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인천지방법원 2009하면3246](#)사건에서 2010. 5. 18. 면책결정을 받아 그 면책결정이 2010. 6. 2. 확정된 사실,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한편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D에 C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9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D의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그대로 이전받았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C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55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C에 대한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는 여전히 면책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C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이나 보험가입금액 증액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관한 위 확정판결이나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여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약 2개월 전 원고가 청구한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아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십수년 동안 약 10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을 증여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하여 100,000,000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C이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 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0. 1. 6.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인혜

별지